

상수원 지역의 가축분뇨처리 강화시 선결조건

지난 6월10일 강원도 홍천을 다녀오는 길에 양평읍을 지날 기회가 있었다. 시내가 온통 플랜카드로 뒤덮여 있다고 할 정도로 큰길이나 작은길을 막론하고 시각을 극도로 자극하는 붉은 글씨의 플랜카드가 어지럽게 걸려 있었다.

호기심으로 그 내용들을 몇개 눈여겨 보았다. 『생존권 말살하는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 즉각 철회하라』 『○○부장관은 즉각 물러가라』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등등 섬뜩한 내용들이 시뻘건 색깔로 커다랗게 쓰여져 보는 이를 소름 끼치게 하였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의 플랜카드는 여주, 이천, 광주, 남양주등 한강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내 시군의 거리에서 10월 현재까지도 펼쳐지고 있다.

참 우연치고는 묘하다고나 하여야겠다. 기고자(寄稿者)는 1997년 6월 20일 경기도 양평군 양평단위농협 백운회관에서 있었던 「상수원보호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공청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였었다. 그당시 정부는 이 법의 제정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였으나 해당지역의 주민과 야당은 이 법의 국회통과를 적극 지지하였었고 그해 그 법은 통과되지 않았다.

그로부터 1년은 이 「법」과 관련하여 볼 때 개혁에 비유할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주민의 거센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주민의 반발로 미루어 볼 때 그 당시(97년 6월 공청회)에 지역주민과 야당 그리고 전문가들이 건의한 의견들이 「법(안)」에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변화(법안)가 없다면 이는 참 이상한 것이다. 그당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가장 귀담아 들었을 쪽은 야당이었을 텐데 여당이 되어서 그것(국민의 요구)을 「법(안)」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무엇일까. 소시민으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고자는 한강물을 마시며 살고 있는 나와 거기에 사는 주민과의 사이에서 수질의 보전에 관한 글을 써야하는 연(緣)을 그저 묘하다고 밖에는 달리 풀을 수가 없다.

이 「법(안)」에서 해당지역 농민들과의 사이에 주요쟁점이 되고 있는 조항



유재일 교수
(축산종합개발원)

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수질오염 예방대책으로 수변구역을 지정(특별대책지역 1Km, 그밖의 지역 500m)하고, 이 구역내에서 축산업의 산업활동에 관한 각종규제(축사의 건축제한, 방류수의 수질기준 강화적용, 이전명령 등)와 법(안) 제4조(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이다.

법 제4조의 행위제한 내용에는 다음 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변경 또는 제거, 토지의 굴착(掘鑿)·성토 기타의 형질변경, 죽목의 재배 또는 벌채등 농축산업의 행위를 극도로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

그리고 가축의 배설물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세부적인 규제를 받게 되어 있으며 이 「법」 또한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지났으며 이 「법」의 제 24조(축산폐수처리 의무)에서는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산폐수의 처리의무(규모의 하한 제한이 없음)를 규정하므로서 모든 양축가가 이 법에 의거 규제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규제들이 전부 적용된다면 경제적인 축산업행위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을 예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을 강화하는 것만이 수질을 보전하는 최선의, 그리고 불가피한 대안 일까?.....

'98년 9월 4일 경기도 양평군 군민회관에서 있는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 제정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축산폐수에 의한 오염관리대책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

이 있다.

〈기본방향〉 ▲지역특성에 맞게 공공처리, 액비, 퇴비화, 유기질비료등 다각적 관리대책 추진 ▲공공처리장이 설치된 지역은 축사구조개선, 저장조설치 등 축산분뇨 분리수거체계 확립 ▲축협이 중심이 되어 유기질비료 제조 시설을 확충하고, 화학비료사업을 감축 ▲축산분뇨의 자원화대책 등의 보완대책이 제시되어 있다.

이런 보완적인 대책으로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상수원의 수질악화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인지를 정부에 묻는 바이다.

이날 공청회 자료에 첨부된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등의 제정취지와 과제(국회정책연구실)」 자료에 의하면 문제점으로 다음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수질정화구역, 수변원충지역등 확대 지정의 문제 ▲상수보호를 전국대상으로 확대 ▲물관리 조직 체계상의 근원적 불합리성 ▲하천관리의 비효율성과 물위기 대응능력의 한계성 ▲정부 기술인력과 환경기초시설 투자 재원의 한계성의 5개항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차원에서 본 문제점이 어떤 것들인

법 제4조의 행위제한 내용에는 다음 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변경 또는 제거, 토지의 굴착(掘鑿)·성토 기타의 형질변경, 죽목의 재배 또는 벌채등 농축산업의 행위를 극도로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

농업과 관련하여서는 땅을 이용한 보수(保水)와 정수(淨水)가 절대 진리적인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미국,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 구미국가들은 토양의 보수력과 정수력을 높여주는 유기성 자원인 가축분뇨를 퇴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를 엿볼수 있는 내용이다.

물의 보전은 양적보전과, 질적보전적인 측면이 있다.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안)」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양법 공히 『질적 측면의 수질보전』과 『배출시설에서의 하수관리(방류수 수질규제)』적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리고 이 「법」들은 이미 10년 넘게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한강을 비롯한 전국의 수질은 환경부의 발표를 통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날로 악화되어 왔다. 기고자는 이 시점에서 「물의 진리」를 다시 음미하고, 『물의 철학』을 정립하여 물을 대하고 다스리는 국가와 국민이 되기를 제언하는 바이다. 우리 조상들은 「치산(治山)치수(治水)」를 철학으로 물을 다스렸다. 서양은 치수(治水)는 토양을 다스리는 것으로 부터라는 철학으로 법이 이루어져 있다.

물은 땅과 강·바다 그리고 하늘을 오가며 늘지도 줄지도(지구상의 총 물(水)량) 않는 자원이다.

「하수구(정화방류시설의 방류구)」를 통제하는것(방류수의 수질기준 규제)만으로

수질을 보전하는 것의 한계를 우리는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다. 하수구 관리만으로 물을 다스린다는 것은 장님의 코끼리 감상에 비유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농업과 관련하여서는 땅을 이용한 보수(保水)와 정수(淨水)가 절대 진리적인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미국,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 구미국가들은 토양의 보수력과 정수력을 높여주는 유기성 자원인 가축분뇨를 퇴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화학비료 사용을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토양에 투입되는 수질오염물질(부영양화 물질 : 질소, 인산, 카리)을 감소시키는 농업체계를 법으로 확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더 이상 가축분뇨를 축산폐수로 취급하는 「법」을 고집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난 10여년간에 정화방류(淨化放流)처리시설에 허비한 재원이 천문학적 액수에 이르고 있음은 정부가 더 잘 알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컨데 가축의 분뇨는 농업 뿐 아니라 수질보전에도 가장 소중한 천연자원(Natural resource)일 뿐 폐수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정화처리하여 방류를 할 때는 아무리 잘 정화하여도 폐수가 된다.

이 나라의 축산업과 경종농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질보전(양적, 질적)을 최소비용으로 이루기 위하여서는 정부는 가장경제적으로 가축분뇨가 경지에 환원되도록 하는 제도(교육포함)을 조속히 수립·시행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이미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음을 인정해야 한다. **養豚**